

<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 안내>

I. 제도 개요

- '18.12.1.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(이하 '단체실손')과 개인실손의료보험(이하 '개인실손')의 연계를 통해 재직 중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을 해소하고 퇴직 후 실손의료 보장이 가능

구 분	재 직 중	퇴 직 후
개인실손 중지·재개	단체실손 가입 후 개인실손 중지	개인실손 재개
단체실손의 개인실손 전환	단체실손 가입	단체실손을 개인실손으로 전환

※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는 단체실손의 임·직원을 대상으로 시행

II. 운영 기준

가. 개인실손 중지/재개

구 분	세부 기준
중 지	신청방법 · 본인이 개인실손에 가입된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 * 재개상품이 중지 전 가입한 상품과 자기부담률 및 보장내용 등이 다를 수 있음에 유의
	신청기준 · 개인실손 가입 후 1년이상 유지 중이며 중지 신청일에 유효한 계약에 한하며, 단체실손과 중복되는 개인실손의 보장종목만 중지 가능
재 개	신청방법 · 본인이 개인실손에 가입된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
	재개심사 ·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시에는 무심사 재개 * 다만, 단체실손 및 개인실손에 모두 미가입기간이 1회당 1개월, 누적 3개월을 초과하거나 퇴직후 1개월 초과하여 신청시에는 회사의 계약인수지침에 따라 재개가 거절될 수 있음
	재개상품 · 기존 중지된 상품이 아닌 재개시점에 보험회사가 판매 중인 개인실손(판매 중인 개인실손이 없는 경우 보유 중인 개인실손)으로 보장 재개 * 재개상품이 중지 전 가입한 상품과 자기부담률 및 보장내용 등이 다를 수 있음에 유의
	재개불가 · 주계약이 아닌 특약으로 가입한 개인실손 중지 후 주계약을 해지하면 중지된 개인실손도 동시에 해지되므로 재개 불가

나. 단체실손의 개인실손 전환

구 분	세부 기준
전환대상	· 전환신청 직전 5년간(계속*) 단체실손 가입자 중 개인실손에 가입 가능한 자(70세 이하) * 단체실손 미가입 기간이 1회당 1개월, 누적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단체실손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
신청방법	· 단체실손 종료(퇴직 등) 후 1개월 이내 신청하고, 직전 단체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신청
전환심사	· 직전 5년간 단체실손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중대질환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 무심사* 전환 * 직전 5년간 단체실손 보험금을 200만원 초과하여 수령하였거나 10대 중대질환 발병이력(5년)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계약인수지침에 따라 결정함.
전환상품	· 전환시점에 해당 보험회사가 판매 중인 개인실손(판매 중인 개인실손이 없는 경우 보유 중인 개인실손)으로 전환되고, 보장종목, 보장금액, 자기부담금 등의 세부 조건은 전환 직전 단체실손과 동일 또는 유사 적용 * 전환 시 보장종목, 보험가입금액, 자기부담금 등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, 회사의 계약인수지침에 따라 보장 확대 여부 결정

☞ 세부 내용은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에서 배포('18.11.28.)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.